

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17. 8. .

제안자 : 환경노동위원장

## 1. 제안경위

가. 이정미의원(2016.7.1.), 윤후덕의원(2016.7.4.), 서형수의원(2016.8.10.)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「최저임금법」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(2016.6.27.)가 제출한 「최저임금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11월 21일 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.

나. 2017년 3월 27일 제350회 국회(임시회)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개정안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다. 2017년 3월 28일 제350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,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,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,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, 사문화된 감시(監視) 또는 단속적(斷續的)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제2항).

#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최저임금액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. 다만,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2. 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(監視) 또는 단속적(斷續的)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최저임금액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